

大學의 自治와 教權에 관한 세미나

朴 德 元
(釜山外大 教養科)

1. 머리말

우리나라에 대학이 세워진 지도 이미 백년을 넘어섰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대학생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대립하여 이념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대학이 오늘날처럼 극심한 수난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캠퍼스가 폐쇄되고 총장실이 점거되고 교수가 폭행을 당하는 등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대학을 진리 탐구와 인격 도야를 위한 지성의 전당으로 자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만시지탄의 감을 안고 대학의 自治와 教權의 문제에 대하여 再考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7월 7일 '대학의 自治와 教權'이라는 題下에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제24차 대학교육 발전 학술 세미나는 위와 같은 취지 아래 대학의 자치와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규명하고 대학이 나아가갈 진로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

총·학장을 비롯하여 대학의 일선 행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진 교수들이 대상이 된 이번의 세미나는 엄격히 말해서 실추된 대학

의 자치권과 교권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었다기보다는 대학의 자치와 교권의 개념 그리고 이들의 법적 근거를 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이 일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날의 세미나에서 서울대의 李敎熙 교수는 '教權의 概念' 그리고 한양대의 梁建 교수는 '大學의 自治와 教權에 관한 法理'라는 제하에 주제 발표를 하였다. '외국 대학에서의 대학 자치와 교권에 대한 사례'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수원대의 姜仁壽 교수가 일본 대학의 사례를 '대학의 자치와 구성원의 교육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연세대의 李亨行 교수가 미국 대학의 사례를 學問의 自由와 관련지어 '대학의 자치와 교권'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주제 발표의 내용 모두를 개괄할 수가 없으므로 李敎熙, 梁建 두 교수의 발표 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대학의 자치와 교권의 신장을 위해 필히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믿어지는 사항들을 필자의 주관적인 견지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2. 敎權의 概念과 正當性

李敎熙 교수는 敎權을 '敎育權'의 준말로서의 敎權과 '敎員의 權威'의 준말로서의 敎權으로 이해하고 있다. 敎權을 전자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제도적 敎育의 대상자, 배후의 친권자, 조직의 관리자 혹은 현장의 실제적 담당자로서 敎育의 형태와 과정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권리를 뜻하게 되며, 이 권리는 일종의 법률적 용어이므로 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법률적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敎權을 후자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이 권리는 敎育 담당자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전문적 권위'를 지칭하는 것이 되며, 이는 또한 사회윤리적 용어이므로 이를 침해할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李교수는 전자보다 후자의 의미로서 敎權을 강조하면서 敎員의 권위를 統制的 權威와 專門的 權威의 두 가지로 개념화하고 전문적 권위를 다시 敎員의 학문적 전문 지식과 능력에 바탕한 理論的 權威와 敎育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전문 기술에 근거한 技術的 權威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李교수는 하급 학교일수록 技術的 權威가 중시되는 데 반하여 대학은 敎수의 理論的 權威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敎權이 침해받게 되는 것은 ① 통제적 권위의 실추로 敎育 현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② 이론적 권위가 무시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③ 敎育외적 목적이나 동기 등에 의하여 기술적 권위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敎權 守護의 방법으로는 전문적으로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의 정당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인 主觀的 體制 그리고 관례와 전통 속에 객관화되어 있는 기준과 통념인 客觀的 體制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梁建교수는 大學 自治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무엇에 관한 자치냐 하는 측면에서 敎員 人事, 敎育·연구의 내용과 방법, 財政, 대학의 권리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자주적 결정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自治의 主體가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전통적 입장에서 볼 때는 敎授會가 주체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학생을 비롯한 대학의 다른 구성원도 점차 참여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았으며, 세째로 누구로부터의 자치냐 하는 측면에서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과 함께, 특히 理事會로부터의 자율이 그 기본적 요소라는 것이다.

梁교수는 대학 자치에 관한 현행 우리나라 法制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法 제정의 방향으로서 교수회의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대학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 중심적 지위에서 서도록 해야 하며, 학생 징계권을 회복하여 敎權을 확립하고 학생과 직원의 대학 행정에의 참여는 대학 자치의 경향이 미숙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아직은 그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초보적 단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의 두 주제 발표는 대학의 자치와 敎권이 포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논의였으며 대학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자치와 敎權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현 단계에서조차도 이들에 대해 成文化된 원칙 하나도 없이 선대의 전통이나 불문율의 관행에만 의지하여 이론적인 개념의 분석만으로 대학이 당면한 난제들을 타개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날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필자 나름으로 느낀 소감은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했으며, 대학 자치와 敎權의 개념도 단순히 字句 그 자체에서 규명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파악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大學의 本質에서 그 해답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학자와 학생들의 집단이며, 독립적 사고의 센터로서 지식의 증진과 보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대학의 이러한 기능이 사회의 유지 존속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大學이 존재해야만 할 當爲性과 正當性을 인정하고 기능 수행의 의무를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 대학

이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자와 학생들이 그들의 本務를 아무런 간섭이나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이 권리는 대학이라는 機關의 측면에서는 대학의 自治權이 되고 대학 구성원의 측면에서는 학문의 자유인 것이다. 교권은 학문의 자유에 속한 권리들 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학문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학의 구성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권리는 학자들에게 해당하는 敎授의 自由(Lehrfreiheit)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學習의 自由(Lernfreiheit)로 구분된다. 전자를 좁은 의미로서의 敎權이라 한다면 후자는 學習權이 된다. 그런데 이 敎權은 學習權을 충족하기 위해 부여된 충족 조건이므로 학습권과 유리된 교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학습권을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교권과 학습권은 대학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배제되거나 무시된 교권이나 학습권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자치권과 교권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권리들은 단순히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리가 아니며,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위에 무조건적으로 부여된 권리도 아니다. 이 권리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존재 목적에 따라 소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주어진 권리이며 이 기능이 수행되는 한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대학에 이 권리들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대학은 그 존재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가 없으며, 존재의 의미와 당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결정적인 손상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 권리들은 대학과 교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유지 존속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며 또한 보장돼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12세기 유럽에 대학이 출현한 이래로 대학이 어떤 시대에도 완전한 자치권과 교권을 누려본 적은 없으며,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평가되는 19

세기의 독일 대학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처럼 극심한 도전과 유린을 당한 시대도 없었다. 무엇이 이 권리들을 침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정치 권력의 간섭 그리고 총·학장의 선출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파다한 개입과 참여를 그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세력들이 권리 침해의 중요 요인들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19세기의 독일 대학이 전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대학의 자율을 구가하였고, 대학 출현 초기에 Bologna와 Salerno를 비롯한 남부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총장직까지도 학생들이 맡았을 만큼 대학 운영 전반을 학생들이 관장했던 시대에도 대학의 자치권과 교권이 비교적 손조롭게 유지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권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침해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권리에 대한 침해는 대학의 운영에 누가 개입하고 참여하느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개입이며 참여냐 하는 데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학도 정부의 도움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건재하기 어렵다. 대학이 국가의 발전에 직결되는 까닭에 국가는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이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권을 충족하기 위해 학교에 대하여 良質의 교육을 요구하고 학교가 그 존재 목적에 따라 眞理 機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들의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개입이나 참여가 대학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權益을 위한 것일 때 대학은 침해를 입게 된다.

대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요인으로는 政治權力, 金力, 宗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 학자들의 연구물에 의하면 오늘날은 대학 내부로부터의 침해가 더욱 심각하고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외면하고 학교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수들의 교권을 말살하게 되며 나아가 대학의 진리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최근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학문의 자유나 교권은 오히려 교수들 자신들에 의해서 더욱 미묘하고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한다. 학문적 도전과 비판을 거부하는 다수 교수들의 폐쇄적 학문 분위기와 태도가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3. 앞으로의 課題

대학의 자치권이나 교권은 선물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며, 침해에 도전하고 수호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권리이다. 오늘의 세미나도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始發段階의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극도로 실추된 대학의 자치권과 교권을 여하히 회복하고 수호할 것이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미국 대학으로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나 교권에 있어 거의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다. 수 많은 교수들이 종교적 교의나 학문적 신념 때문에 교직을 박탈당했으며 좌경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여 우리의 대학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난과 유린을 당해 왔다. 그러던 미국 대학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학문의 자유와 교권을 향유하는 대학으로 바뀌어 있다. 그 비결은 Johns Hopkins 대학의 18명의 교수가 주축이 되어 발족된 미국대학교수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독일 대학이 향유한 학문의 자유 이념과 전통에 자극을 받은 미국 교수들은 독일 대학과는 대조적인 자신들의 위치를 반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15년 John Dewey를 초대 회장으로 하는 AAUP를 탄생시켰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대학의 불문율적 전통과 관행으로만 이어져 오던 자치권과 교권 및 교권 수호를 위해 필수 수단이 되는 교수 정년 보장권(academic tenure)에 대해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학의 기본 원칙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미국 대학을 정위치에 올려 놓았다. AAUP는 이제 대학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함은 물론 자치권과 교권의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대학에 관한 입법·행정·사법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은 아직까지 대학의 자치나 교권에 대한 이렇다 할 원칙이 없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고전적 전통과 관행에만 의존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교수들도 이 일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수들이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면 既存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이 事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오늘날 물의를 빚고 있는 敎組의 발족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 교수도 적지 않음은 교권을 대변해야 할 대한교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금까지 수 없이 발생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AAUP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